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2
----------	-----

제안년월일 : 2005. 10.

제안자 : 신길철 의원외 1인

#### 1. 제안경위

- 가. 지방의회의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되어
- 나. 2005년 9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채택하고
- 다. 2005년 9월 12일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영등포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 라. 2005년 9월 14일자로 서울시장으로부터 회기수당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되었고, 2005년 10월 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 됨에 따라,
- 마.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배제하여 적용시기를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1일에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 하고, 부칙에 적용시기를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함.

####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회기수당은 1일에 70,000원으로”를 “회기수당은 1일에 100,00원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수당 지급) ① (생략) ② 회기수당은 1월에 70,000원으로 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3조(회기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기수당은 1월에 100,000원으로 -----.		